

#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8,841,000	13,465,230
일반회계	380,676,987	11,420,310
특별회계	68,164,013	2,044,920
공기업특별회계	25,779,626	773,3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779,626	773,389
기타특별회계	42,384,387	1,271,532
주택사업특별회계	20,383	611
의료보호특별회계	719,143	21,574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796,806	83,904
장학사업특별회계	8,936,908	268,1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94,231	11,8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95,024	35,851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7,601	23,628
수질개선특별회계	27,534,291	826,02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02,753천원으로 한다. 예비비는 재난상황시 재난지원금에 우선 사용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